

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03년 3월 7일
조례심사특별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3. 2. 28. 평창군수(자치행정과장)

나. 회부일자 : 2003. 3. 4

다. 상정일자 : 제101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
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(2003년 3월 7일)상정 ·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자치행정과장 신영선)

가. 제안이유

- 이효석 문학관 관리·운영, 2010동계올림픽유치지원팀, 수해피해항구복구 인력 정원승인에 따라 증원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이효석 문학관 관리·운영 정원 3명 증원
- 2010동계올림픽유치지원팀 지원인력 4명 증원
- 수해피해 항구 복구 보강인력 1명 증원
- 시·군 정보화사업 추진인력 2명 한시정원 기한연장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박태영)

- 먼저 상위법을 살펴보면,

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-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따라 평창군에서는 강원도지사로부터 이효석문학관 관리·운영 인력 3명 증원은 2002년 12월 10일에, 2010동계올림픽유치 지원팀 지원인력 1명 증원은 2002년 10월 29일에 각각 승인되었고,
- 시·군 정보화사업 추진인력 2명의 한시정원은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승인을 받았습니다.
-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요지	답변요지
○ 수해복구전담 인력 1명 채용공고시 한시정원이란 표기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? (고응종 의원)	○ 공고에는 표기되지 않았지만 한시정원은 별도로 인정을 받음으로 예외적으로 연장이 가능함.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시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붙임 :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부.